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4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등에 의거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복수학위”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복수학위 파견학생”(이하 “파견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 파견되는 본 대학교 학생을 말한다.

③ “복수학위 방문학생”(이하 “방문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한 교류대학 외국학생을 말한다.

④ “복수학위 교류학생”(이하 “교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파견되거나 방문하는 파견학생과 방문학생을 말한다.

⑤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학과(전공) 또는 단과대학은 상호 교육과정 인정내용, 학위수여 조건, 선발기준, 등록금, 장학금, 경비지원 내용 및 교류인원 등을 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교류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본 대학교에서 2년, 교류대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및 교류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제3조의 2(교육과정 및 책임교수)** ① 방문학생은 복수학위과정 협약시 정한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복수학위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방문학생의 수학기간 중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학위과정별로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책임교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7.1.]

**제4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복수학위 과정의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9.1.)

1. 파견일 기준으로 직전학기 포함 4학기 이상 이수하고 2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한 자
2. 2학년까지 개설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학점을 이수한(예정인) 자
3.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및 기타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4.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5.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국제교류처가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한 자
- ② 복수학위 신청자는 본 대학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을 외국대학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발)** ① 복수학위과정 선발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실시하며, 복수학위 협정체결 학과는 소속 학과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지원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국제교류처에 추천하고, 국제교류처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복수학위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3.9.1.)

1. 복수학위이수지원서 1부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1부
  3. 복수학위 수학계획서 1부
  4. 학부모 동의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교류대학 언어능력 및 기타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
  7. 기타 국제교류처가 제출을 요하는 서류
- ② 선발인원은 복수학위 협정에서 정한 인원을 선발하되, 수학능력 및 교류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파견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본 대학교 및 파견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및 파견대학의 재학생 자격을 보유한다.

② 복수학위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파견 및 방문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숙소 등 기타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파견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복수학위과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복수학위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기 중에는 휴학 할 수 없다.

④ 파견대학에서 2년을 초과하여 수학하여야 할 경우, 본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의 8학기 초과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파견대학의 등록금은 파견대학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교류학생은 복수학위 협약상의 해당 학과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파견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이수한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본 대학교의 학사 제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파견대학 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파견대학에서 발송된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국제교류처를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 처리하며, 취득한 성적의 교과목명과 등급 등은 그대로 표시한다. (개정 2018.7.1., 2021.6.1.,

**2023.9.1.)**

- ④ 방문학생은 본 대학교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하고,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사 제 규정에 따른다.
- ⑤ 복수학위과정 중도포기 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⑥ 본 대학교는 비상사태 시 방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1.01.)

- 제8조(학위수여)**
- ① 교류학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양 대학교 규정 및 교류협정에서 정한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때 양 대학교에서 동시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파견학생의 본 대학교 학위는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파견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완료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 대학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교류학생은 본 대학교의 졸업사정 시 영역별 이수요건, 졸업종합시험 및 기타 졸업자격인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증에는 교류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수여하는 복수학위임을 표시한다.

- 제9조(준수사항)**
- ①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우리나라와 교류국가의 출입국 관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기타)**
- ① 교류학생의 수학에 필요한 제 경비는 양 대학교의 협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복수학위 협정 체결대학과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